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6561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 소유의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2

5883㎡(2011. 1. 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4.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2010.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압류 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010. 11. 30. 원고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신용정보등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12. 30.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감면을 하기로 하여 2011. 1. 11. 9,065,490원을 감액하였고, 피고는 2011. 1. 19. 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19. 이 사건 압류를 각 해제하였으나 2011. 3. 30.에서야 이 사건 제1 신용정보등록을 철회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2011. 6. 10. 매각되자, 피고는 2012. 1. 10. 위와 같이 감면되었던 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2. 3.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2. 2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2. 3. 10.경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12. 3. 26.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2. 7. 3. 원고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신용정보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2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2011. 1. 11.경 세액감면을 하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신용정보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3개월 동안 방치하여 원고가 2011. 3. 2.경 한국양계농협 길음뉴타운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15. 5. 10. 기술보증기금 인천회생관리센터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제2 신용정보등록으로 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신용정보등록의 철회가 2011. 3. 30.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에 이른 것이 이 사건 제1 신용정보등록의 철회가 지연되었기 때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redacted]은행, [redacted]협 [redacted]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기관은 본인실명확인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redacted]협 [redacted]지점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정보조회 이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8. 24.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신용정보등록을 철회한 이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2

도 매각기일까지 2개월 남짓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신용정보등록의 철회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데,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더욱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까지 한 바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